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분석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김우영** · 마희영*** · 유지연****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분석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회계기준을 비교하여,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용어 등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한 후, 재무제표와 연계하여 회계정보 산출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학기관 회계기준 간 명칭의 부조화, 회계용어 정의, 계정과목 분류 체계 등 회계처리 방법 제시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는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명칭 변경, 관련 용어 재정의 및 계정과목 체계 정비 등을 통해 대학 간의 회계처리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예산회계 중심의 회계처리, 운영성과를 표시하지 못하는 운영계산서, 합산재무제표 작성의 어려움 등 회계정보 산출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분리하여 예산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회계의 재무제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운영차액변동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하고, 현금주의 운영성과와 발생주의회계 운영성과를 비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운영성과표에서 운영차액의 분리를 통해 당기의 성과와 적립금 변동이 구분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합산재무제표를 종합재무제표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기관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정책당국이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특례규칙을 재정비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사립대학 회계기준

* 본 논문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사학기관 회계기준에 관한 연구」(2017.11.26)의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수정하여 작성되었다.

**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kimwy01@dongduk.ac.kr, 주저자

*** 동덕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hy7026@dongduk.ac.kr, 교신저자

****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박사, yoojiyeon@hanyang.ac.kr, 공동저자

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비영리회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비영리회계의 투명성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비영리법인 중 사학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고 사학기관의 회계는 주로 대학교육기관의 회계 정보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재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다. 이 중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모든 사학기관에 적용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대학교육기관에만 적용된다. 본 연구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재무회계 특례규칙은 사립학교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재무회계 규칙의 예산, 회계, 결산에 대한 특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산 및 회계결산에 관한 개선방안을 다룬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다른 기준 하에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비교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과 국립대학 회계법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일반적인 문제점 및 회계처리 방법 제시에 대한 검토와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이는 현재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명칭이나 계정에 대한 정의, 발생주의회계와 현금주의회계를 사용하는 회계처리 방법의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회계정보 산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예산회계 중심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정의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운영성과표와 합산재무제표 등의 재무회계 특례규칙에 근거한 회계 자료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현재 운영계산서는 운영손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합산재무제표 역시 회계기준의 차이와 계정과목의 상이함으로 인해 작성의 실익이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무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를 제시하고, 제Ⅲ장에서 국립대학 회계기준,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내용을 비교하고 제Ⅳ장에서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전면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개정 시 고려할 사항을 논의한다.

II. 연구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조직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교육사업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활동 범위와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회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법인 중 사학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고, 사학기관의 재정 규모와 이해관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사학기관 회계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학비리에 대한 이슈가 주요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기관으로서 공익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책무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어 사학기관의 회계기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박정원(2009)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낮아 고등교육비의 대부분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의 부담이 높은 것이 현실이고, 이는 대학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학기관에 대한 회계정보 요구는 유치원, 고등학교 및 대학 등 사학기관 전반에 걸쳐 증가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학회계이다(김우영 외 2015). 대학의 등록금과 사학의 비리 등으로 인해 대학의 회계정보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전반적인 개편을 위한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사학기관 관련 회계제도는 1969년 7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대학에만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재무회계 특례규칙)은 1981년 2월 제정되었다. 재무회계 특례규칙은 이후에도 여러 번의 개정이 이루어져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나, 현재까지도 많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김경옥 2008).

박태승(2002)은 재무회계 특례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회계 용어의 정비, 재무제표 양식의 변경, 감가상각 등 발생주의회계의 전면적인 도입과 자산평가기준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영관과 백운경(2006)은 교육재정, 학교예산회계시스템과 학교회계제도의 내용을 검토한 후 발생주의회계와 복식부기회계 도입의 실질적인 기대효과와 해결과제를 연구하였다. 복식부기회계 도입으로 관리정보의 유용성 향상, 재정상황의 종합적인 파악, 단위학교 보유 자산의 인식, 재정운영 성과측정을 위한 기반구축, 공무원 인식전환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발생주의회계 및 복식부기회계가 발전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교예산회계에 적합한 회계기준의 제정과 관리기법 개발, 단위학교 내 조직의 책무성 증대, 긴밀한 산·학·관의 협조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철호(2008)는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실무적용상 문제점을 연구하였는데, 계정과목에 차이가 있는 다른 회계단위를 종합하는 종합재무제표 작성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운영계

산서와 자금계산서가 중복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운영계산서가 경영성과를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서수덕(2014)은 자금계산서의 작성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실제 자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운영계산서도 운영성과와 운영차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우영 외(2015)는 모든 사학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은 사학기관 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계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칙의 전반적인 개정을 제안하였다. 사학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산, 물품, 계약 및 공사와 관련된 규정과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별도로 적용되는 예산과 회계부분은 분리하여 새로운 사학기관 예산 및 회계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우영 외(2017)는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및 사립대학의 회계기준에 대한 근거 법률과 회계단위가 달라 회계정보의 이용이나 회계감사의 효율성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회계기준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및 사립대학의 회계기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사학기관 회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주장은 현행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재무제표는 사립대학의 재정상황과 운영성과 등 운영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독특한 회계용어의 사용으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회계전문가들도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운영계산서가 대학의 운영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학교기업회계 등 회계실체마다 회계처리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종합재무제표의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기준 하에서 회계처리를 함으로서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낮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국립대학 회계기준 및 사립대학의 재무회계 특례규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회계 특례규칙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비영리조직 및 대학의 회계 관련 기준 검토

1.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검토

가. 비영리조직 회계기준¹⁾의 도입과 제정 특징

한국회계기준원은 사립대학이나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등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을 높이

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2017.07.20.)

기 위한 단일 회계기준으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을 2017년 7월 20일에 제정하였다. 이 기준의 제정은 종교, 학술, 문화,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조직 회계에 대한 지침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기준의 적용은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비영리조직의 자발적 선택이다. 그러나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제정으로 비영리회계실무에 점진적으로 수용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준거도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사립대학 회계기준 개편 시 핵심적인 기준점이 될 것이다.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제정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정보를 체계적이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현행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목적이 감독기관에 대한 제출용도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정보수요를 공통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식부기회계 기반의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증대시켰다는 것이다.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에서 제시한 재무제표는 비영리기관의 재무제표 명칭과 형식을 통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모든 비영리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체계적이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셋째, 일반목적 재무보고는 비영리조직 전체에 대한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다. 감독목적 재무보고에서 비영리조직 내 회계단위가 복수로 구분되는 것은 존중될 필요는 있지만, 회계단위별 재무보고 정보는 주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넷째, 복식부기회계와 발생주의회계에 기반한 재무제표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현금흐름표 및 주식으로 통일하여 제시하였다. 비영리조직의 경우 ‘고유목적사업활동의 내용’이 중요하므로 손익계산서라는 명칭 대신에 ‘운영성과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실무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흐름표 작성을 요구하는 대신 수지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조문식을 채택하였다. 실무상황을 고려하여 설명식 보다는 조문식으로 더 간단명료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사립대학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립대학 회계기준을 제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회계상 주요 특징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재무제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을 이원적으로 구분하였다. 순자산을 제약의 유무에 따라 ‘제약이없는순자산’과 ‘제약이있는순자산’으로 구분하였는데, ‘제약이없는순자산’은 이익잉여금의 개념이고, ‘제약이있는순자산’은 기본금의 개념이다. 이러한 특징은 비영리조직이 단기적인 공익사업 수요에 적시성 있게 대처할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장기적인 공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정보이용자

에게 알릴 수 있어 유용하다. 둘째, 운영성과표가 기능별 비용보고를 강조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의 활동노력과 성과에 관한 정보, 즉 비용집행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기능별 보고를 강조하고 있다. 일반정보이용자에게는 계정 성격별 정보보다는 기능별 정보가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기능별 운영성과표를 강조하고, 성격별 정보는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운영성과표의 기능별 보고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성과표 구조를 비영리조직의 성격과 부합되도록 제시하였다. ‘제약없는순자산’과 ‘제약있는순자산’의 각 구분별로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며(각 구분 간 대체 포함), 각각 ‘제약없는순자산의 변동, 제약있는순자산의 변동’으로 명명하였다. 제약이 해제된 순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당해 연도 운영성과표의 ‘제약없는순자산의 변동’ 부분에서 사업수익이나 사업외수익의 일부로 직접 반영하도록 하였다. 수익과 비용을 사업항목과 사업외항목으로 분류하는데 수익 중 기부금, 보조금, 회비, 등록금, 공연수익, 환자진료수익 등은 사업수익으로, 예금이자, 유형자산처분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등은 사업외수익으로 분류하고, 비용 중 사업수행비용과 지원비용(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은 사업비용으로, 이자비용과 유형자산처분손실 등은 사업외비용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운영성과표 사업수익(사업비용)을 크게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으로 구분표시 한다.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의 주요 계정의 회계처리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현행 회계실무의 현금주의 수익인식을 인정하되,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회계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 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미수금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기부약정에 대해서는 발생주의회계에 따른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현금이 유입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둘째,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그 공정가치로 수익을 인식하며 서비스를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일반인의 무료봉사활동은 서비스기부에 해당하며 비영리조직에게 효익을 주는 것이지만, 그 가치를 충분히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수익인식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유·무형자산(감가)상각을 실시한다. 그러나 전시·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보유 중인 예술작품 및 유물과 같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는다. 넷째, 유형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 재평가차액 누적금액은 재무상태표상 해당 순자산 분류(제약없는순자산, 제약있는순자산) 내에서 세부항목으로서 별도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섯째, 투자유가증권을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주식으로 구분하는 정보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비영리조직이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재무상태표 표시나 주석기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투자유가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투자유가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그리고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여 정보유용성을 향상시킨다. 일곱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재무회계개념체계의 부채와 비용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여덟째, 비영리조직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로부터 받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의 적용을 배제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유형의 정부보조금을 사업수익으로 회계처리 한다. 다만, 정부보조금에 일시계약이나 영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이 아니라 계약있는순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한다. 아홉째, 주석기재사항을 규정한다. 재무제표 항목에 대한 설명정보, 상세구분 정보 및 분석정보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면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은 거래나 회계사건으로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면 재무제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국립대학 회계법의 검토

가. 국립대학 회계법의 제정 특징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던 국립대학의 회계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 회계법)의 제정으로 통합되었다. 국고 일반회계는 국가 지원금에 대한 회계로 정부가 국고 지원금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하였으며, 기성회 회계는 기성회비 등의 예산을 대학의 장이 편성하고 기성회 이사회를 심의·의결하는 구조였다.

국립대학 회계법은 이원화되어 있던 예산편성과 결산권을 재정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예산편성과 결산권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고, 예산집행 잔액도 이월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자체 재정확보가 가능하도록 자율권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평생교육원, 특수대학원 비학위과정, 여학원 등의 수입금, 사용료, 수수료수입 등이 과거에는 국고에 귀속되었으나 이를 대학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수익사업 운영, 각종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대학 자체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국립대학 회계법 제5조(국립대학의 의무) 제2항에서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제5조(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수립 등)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영계획의 세부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국립대학 회계법의 이러한 계획 요구는 예산의 자율성과 자체 재정확보에 대한 계획성 혹은 성과의 사후관리를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

나. 국립대학 회계법의 회계상 주요 특징

국립대학 회계법의 회계상 주요 특징은 첫째, 대학운영의 성과 측정과 연계된 회계연도로의 변경이다. 즉 국고 지원금 일반회계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비국고회계

의 회계연도가 3월 1일부터 2월말이었던 것을 통합하여 회계연도를 3월 1일부터 2월말로 변경하였다. 일반회계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 것은 국고 지원금의 집행 결과를 정부회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의 회계연도의 불일치는 회계와 재정성과를 연계시키는데 많은 조정이 요구되고, 정확한 성과측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회계연도를 대학의 학사일정인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설정한 것은 대학의 성과와 회계운동을 일치시켜 성과측정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복식부기회계와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으로 국가회계법과 일관성 유지이다. 국립대학법 제22조(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서 거래의 발생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복식부기회계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제34조와 제40조에서는 발생주의회계와 복식부기회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는 현금주의보다 운영성과의 측정이 우월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은 결국 국립대학의 성과평가와 연계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행 국가회계법이 발생주의회계와 복식부기회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국립대학 회계법의 발생주의회계와 복식부기회계 방식의 도입은 국가회계법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²⁾

국립대학 회계법

제22조(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의 발생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제34조(회계처리의 일반원칙) 대학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재정운영표의 작성 기준) ① 재정운영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한다. ②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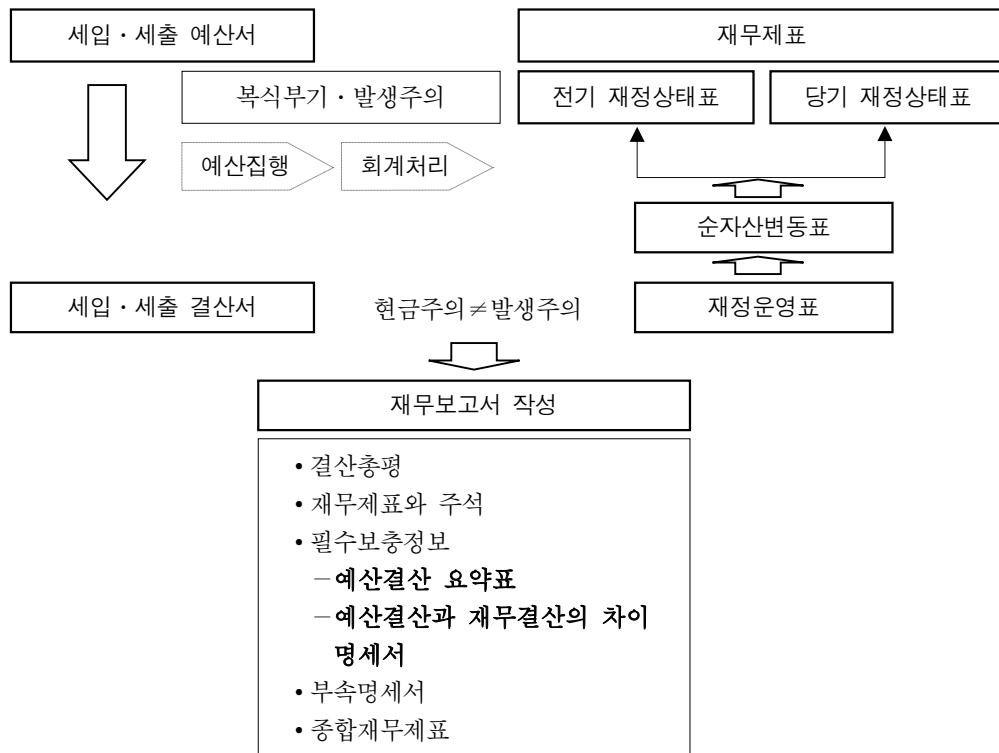
셋째, 예산과 회계의 분리인데, <그림 1>은 국립대학 예산과 회계의 연계성을 보여준다. 국립대학 재무보고는 세입·세출의 예산서와 결산서 및 재무제표 작성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세입과 세출을 현금주의로 작성하고 결산과 재무제표는 발생주의회계와 복식부기회계를 바탕으로

2) 국가회계법 제11조(국가회계기준) 제1항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작성하되, 그 차이를 조정하여 공시함으로써 현금주의 실적과 발생주의 실적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대학 회계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재정상태표 변동은 당기의 성과를 표시하는 재정운영표와 순자산변동표로 설명한다. 재정운영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재정운영의 결과를 나타내며, 이는 당기의 성과를 발생주의회계로 측정하는 재무제표이다. 순자산변동표는 기초 순자산에서 출발하여 전기오류수정손익과 회계변경누적효과 등과 재정운영결과를 가감하고 순자산 조정항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고, 이 순자산변동표는 전기와 당기 재정상태표의 증감을 설명한다. 국립대학 회계법은 예산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되 그 차이를 조정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국립대학 회계법은 현금주의에 의한 성과를 세입·세출 결산서로 나타내며, 현금흐름표의 정보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 세입·세출 예·결산서가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재무보고서에 포함되므로 현금흐름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립대학 회계법은 예산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되 그 차이를 조정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

〈그림 1〉 국립대학 예산과 회계의 연계성



이는 사립대학 회계가 자금계산서 중심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예산과 회계가 분리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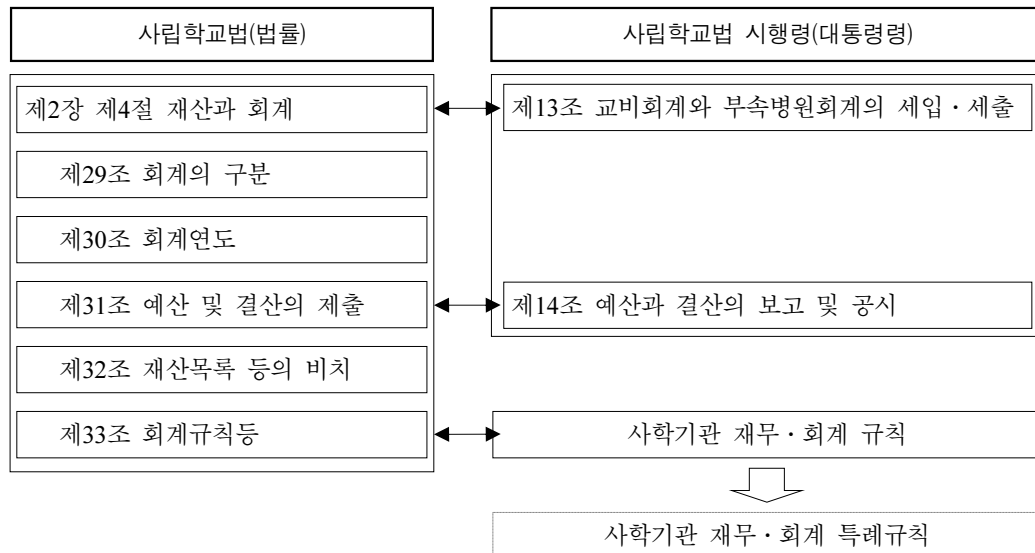
3.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검토

가.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법적근거 및 체계성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설립주체, 그 재산 및 회계와 감독 기타 사립학교교원의 자격과 신분보장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3년 6월 26일에 제정되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학교법인,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제4장 사립학교교원,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으로 총 7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회계 관련 내용은 제2장의 제4절 재산과 회계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29조 회계의 구분, 제30조 회계연도,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32조 재산목록 등의 비치, 제33조 회계규칙등이다.

제33조 회계규칙등에서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회계규칙의 제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모든 사학기관에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대학교육기관에만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2>는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의 회계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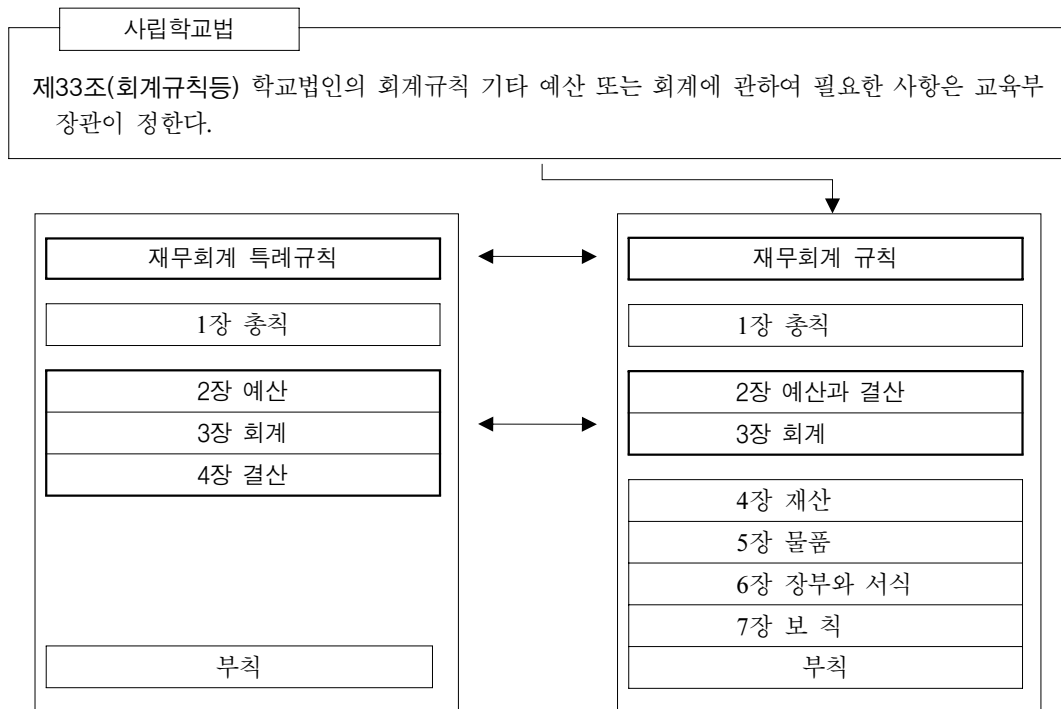
〈그림 2〉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의 회계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사학기관 회계규칙의 체계성은 <그림 3>과 같다. 모든 사학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이 있으나, 이 규칙 중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별도의 규칙이 재무회계 특례규칙이다. 재무회계 특례규칙 제3조 제1항에서는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적용대상은 사립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회계 특례규칙은 사립학교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재무회계 규칙의 예산, 회계, 결산에 대한 특례이다. 이 때문에 재무회계 특례규칙은 재무회계 규칙과 일정한 연계성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재무회계 특례규칙에 사립학교법의 법적 근거 혹은 재무·회계 위임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림 3> 사립학교법과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대학과 대학의 학교법인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의 실무지침서 역할을 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이하 재무회계 특례규칙 해설서)가 있다. 이 해설서는 교육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임을 하여 작성하는데,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및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개정이 있으면 개정과 관련되는 유의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사학진흥

재단이 해설서를 제작하여 사립대학에 제공하고 있다.³⁾

나.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재무제표 특징

재무회계 특례규칙에서 사립대학이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⁴⁾ 기업회계기준에는 이와 유사하게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존재한다. 재무회계 특례규칙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는 자본변동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이다. 사립대학은 비영리법인으로 자본이나 잉여금 처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회계 특례규칙에서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금계산서에는 사립대학과 법인의 일반업무에 따른 모든 자금수입과 지출이 보고된다. 그리고 거래의 결과로 자산, 부채 및 기본금의 증감을 가져오면 대차대조표에 반영되며, 수익과 비용에 관련된 거래는 운영계산서에 보고된다. 이는 비영리회계의 특징인 예산회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계산서를 중심으로 한 사립대학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자금계산서에서 자금지출은 자금예산항목 중 당해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으로 구분된다. 한편 자금수입은 자금예산항목 중 당해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과 미사용전기이월자금으로 구분된다. 자금계산서에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대차대조표의 당기말 유동자산에서 당기말 유동부채를 차감한 잔액이고,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대차대조표의 전기말 유동자산에서 전기말 유동부채를 차감한 잔액이다. 단, 유동부채에서 단기차입금은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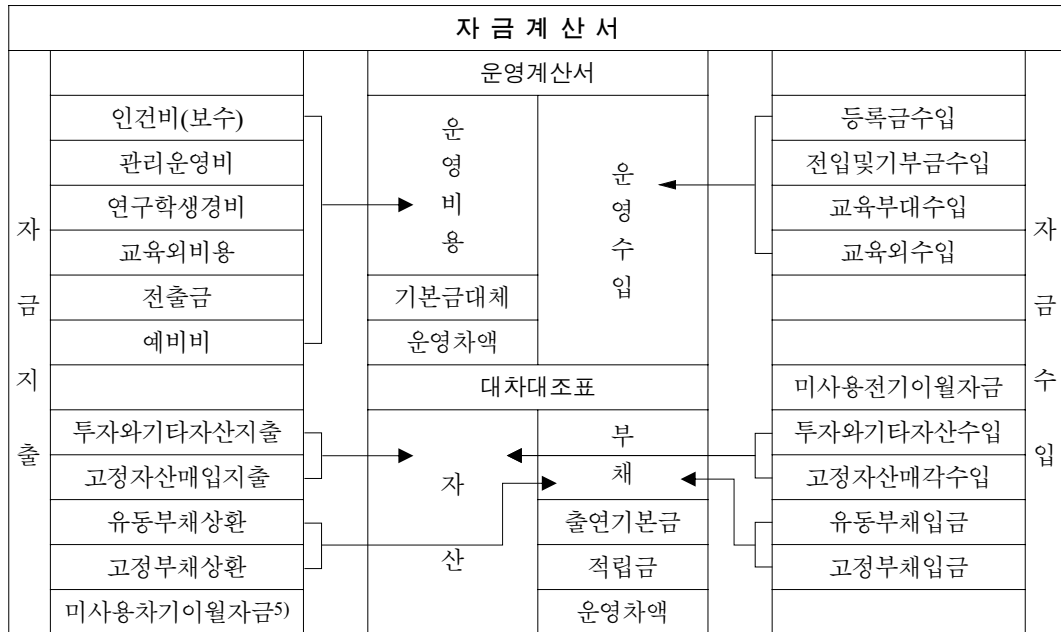
운영계산서에서 기부금수입은 자금의 수입이 없는 현물기부금이 포함된다. 기타교육외수입에는 자금수입이 없는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투자유가증권지분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 잡수입 등이 포함된다. 운영계산서의 교육외비용에는 자금지출이 없는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고정자산처분손실, 무형고정자산상각액, 잡손실 등이 포함된다. 운영계산서는 운영수입 총액에서 운영비용 총액을 차감하여 운영차액이 표시된다. 여기서 운영비용에는 기본금대체액이라는 독특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금대체액’은 당해연도 운영수입 중 고유목적에 위한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운영차액’은 기업회계에서의 당기순이익과 그 성격이나 내용이 크게 다르며, 이로 인해 당기의 운영성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3) 사립학교법 제33조(회계규칙등)에서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사업) 제4호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교육부장관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무회계 특례규칙에 이를 위탁한다는 명확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4) 사립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 제16조(재무제표)

- ①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로 한다.
- ②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

〈그림 4〉 사립대학 재무제표 간 연계도



출처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2015), 한국사학진흥재단

IV.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1. 재무회계 특례규칙 명칭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가. 재무회계 특례규칙이라는 명칭의 부조화 문제점

재무회계 ‘특례규칙’이라는 용어는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의 의미로 두 규칙 간에는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무회계 특례규칙은 사립대학과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예산, 회계 및 결산에 대한 규칙으로 적용대상과 범위 및 회계처리가 재무회계 규칙과 관련성이 없다.⁶⁾ 따라서 재무회계 특례규칙은 재무회계 규칙의 특례라기보다는 사립대학과 법인에게 적용되는 별개의 규칙인 것이다.

5)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이월되는 현금이 아니라 운전자본의 개념이다. 따라서 현행 자금계산서는 이월되는 현금을 정확히 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6) 다만 재무회계 특례규칙에 없는 재산보호, 물품 및 계약 등에 대해서 사립대학이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재무회계 특례규칙이라는 명칭의 부조화 개정방안

재무회계 특례규칙이 대학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예산 및 회계 기준이므로, 명칭을 「사립대학 예산 및 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사립대학 회계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는 재무와 회계를 규정하고, 재산, 물품 등을 대학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현행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수정된 발생주의회계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가. 수정된 발생주의회계의 문제점

재무회계 특례규칙은 실무의 편의상 수익은 현금주의회계, 비용은 발생주의회계로 처리하는 수정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하고 있으나, 발생주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현재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을 인식하는 앎음으로서 올바른 경영성과를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최근 도입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에는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하고 있고, 경영성과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부재는 사립대학 회계의 정보 유용성을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나. 수정된 발생주의회계의 개정방안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제1항은 “이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복식부기회계와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은 복식부기회계와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하고 있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도 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에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였다.⁷⁾ 이에 따라 사학기준 회계기준 역시 복식부기회계와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고, 이를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특정사항에 대해 발생주의회계 이외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발생주의회계 원칙을 명문화하되 현금주의회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3. 회계용어 정의와 계정과목 체계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가. 회계용어 정의와 계정과목 체계의 문제점

현재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회계용어 중 대차대조표, 운영성과표 등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자산, 부채 및 기본금 등의 기본적인 계정에 대한 정의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7)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재정운영표의 작성 기준) 제2항은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표 작성에 발생주의를 도입하였다.

다만, 별지 서식에서 계정에 대한 설명만 존재한다. 재무회계 특례규칙이 회계규칙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용어에 대한 정의, 회계처리의 기준, 계정의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대차대조표 자산 항목에 대해서는 자산의 정의와 이를 어떤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인식하는 지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운영계산서의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을 정의하고 있으나, 운영수익을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증가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교환거래가 아닌 손익거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나 부채의 감소도 운영수익이 될 수 있으므로 불완전한 용어 정의이고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회계용어 정의와 계정과목 체계의 개정방안

일반적인 회계지식이 있는 정보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회계용어를 사용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진다. 계정에 대한 정의가 부정확한 것은 그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여, 대학 간의 회계처리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분류 체계 변경 및 계정과목의 정비가 필요하다. 유동자산, 투자및기타자산,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의 분류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설치학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립대학교 재무상태표와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단, 사립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계정과목인 설치학교와 같은 과목은 국립대학에는 없는 계정과목이므로 이와 같은 계정은 예외로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받을어음, 학교채선수금 등을 삭제하는 등 계정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함에 따라 선수수익 등의 계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정에 대한 정의가 부정확한 것은 그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여, 대학 간의 회계처리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4. 회계정보 산출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가. 예산회계 중심 회계처리의 문제점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회계처리는 현금주의회계로 작성된 자금예산서 상의 자금 집행으로 시작된다. 자금 집행에 대한 회계처리와 결산과정을 거쳐 대차대조표, 운영성과표가 작성되며, 최종 결과는 자금계산서로 귀결된다. 자금계산서의 미사용전기(차기)이월금은 운전자본의 개념과 유사하나, 일반 정보이용자와 회계 전공자도 이를 해석하고 이용하는 데 생소한 개념으로 이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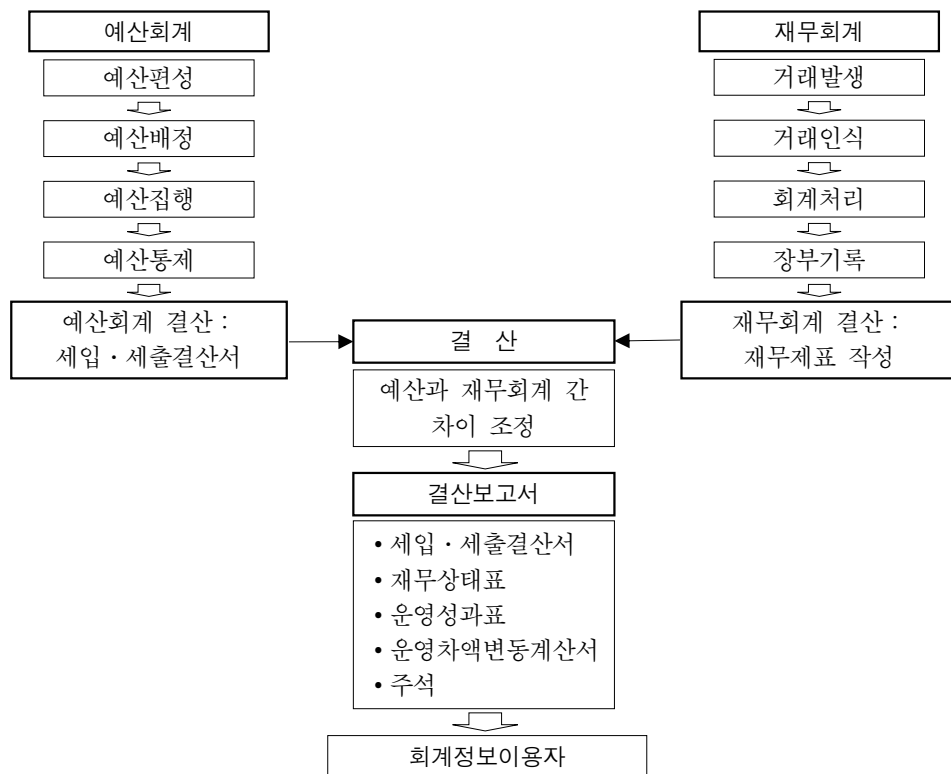
나. 예산회계 중심 회계처리의 개정방안

<그림 5>와 같이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분리⁸⁾하여 예산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회계를 재무제표로 구분하며,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운영차액변동계산서 및 주식으

8)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학교회계 도입방안 연구, 이동규 외 3인, 2006.10. 교육인적자원부

로 구성하여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과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분리로 예산회계는 현금주의회계와 단식부기회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자금예산서와 자금결산서를 세입·세출예산서와 세입·세출결산서로 명칭을 변경하면 국립대학 회계와 비교가능성이 제고된다. 재무회계는 발생주의회계와 복식부기회계를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명칭을 변경하며, 운영계산서는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에 따라 운영성과표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을 재정의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림 5〉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분리 및 차이 조정



예산을 자금개념에서 현금개념으로 전환하여 정부 및 국립대학 등이 작성하는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의 개념과 일치시키도록 한다. 이는 자금계산서의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 운전자본의 개념이었으나, 세입세출결산서를 도입하면 대학과 법인의 이월 현금에 대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세입·세출결산서와 운영성과표 및 운영차액변동계산서와의 차이를 조정하여, 현금주의회계와 발생주의회계의 운영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명시 및 사고이월 금액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표 1>과 같이 세입·세출예산서는 전년도 예산과 비교표시하여 변동액의 정보를 제공하고, 산출근거는 세입·세출예산서 공시에서는 생략하나 부속명세서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1〉 세입·세출예산서(안)

계정과목			산출근거	세입당기예산(A)		전년예산		증감	
관	항	목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순세계잉여금									
	등록금수입								
			대학						
			인문사회계열	$\text{₩}3,000 \times 1,200\text{명} =$	3,600,000				
			자연계열	$\text{₩}3,700 \times 900\text{명} =$	3,330,000				

계정과목			산출근거	세출당기예산(B)		전년예산		증감	
관	항	목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보 수									
	교원급여								
	차기이월금								

<표 2>와 같이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에는 최초예산에 당초예산의 변동액과 전기이월액을 반영하여 세입결산액이 표시되도록 하고, 최초예산금액에 예산 결정 후 증감 내역인 세입예산조정액, 전기 이월액 등을 반영하여 세입결산액이 표시되도록 한다.

〈표 2〉 세입·세출결산서(안)

[illegible]

<표 3>과 같이 세입·세출결산서와 운영성과표 및 운영차액변동계산서의 각 계정별로 차이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게 하여, 현금주의회계에 의한 성과와 발생주의회계에 의한 성과를 대비시키도록 한다. 현금주의회계로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회계로 작성한 운영성과표 및 운영차액변동계산서를 비교하는 것은 현행 자금 중심의 자금계산서보다는 정보가 증대될 것이다.

〈표 3〉 세입·세출결산서와 운영성과표 등과 차이조정 명세(안)

계정과목	세입·세출 결산서(A)	계정과목	운영성과표 및 운영차액변동 계산서(B)	차이금액 (C=B-A)	차이내역
세입결산액		운영수익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
		기본금조정		×××	미실현손익
적립금 등의 환입		적립금 등의 환입			공통과목
수입·수익 차이	×××		×××	×××	
세출결산액		운영비용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차이
		기본금조정		×××	미실현손익
적립금 등의 적립		적립금 등의 적립			공통과목
지출·비용차이	×××		×××	×××	
순세계잉여금	×××	차기이월미처분운영차액	×××	×××	

5. 운영계산서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가. 운영계산서의 문제점

운영계산서는 자금예산서의 계획에 따라 집행된 적립금 대체와 인출이 포함되어 있어 사학기관의 당기 운영성과를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운영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당기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의 차이로 당기 운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산의 평가 등으로 인한 미실현손익을 별개의 항목으로 표시하여 당기의 성과와 미실현손익의 효과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무회계 특례규칙에서는 적립금 대체와 운영차액 대체액의 크기에 따라 당기 운영차액이 변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일반 정보이용자에게 당기 운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운영계산서의 운영차액에는 기관의 운영손익과 적립금 변동이 혼합되어 있어 당기의 성과와 적립금 변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나. 운영계산서 작성의 개정방안

기존 운영계산서의 운영차액에는 기관의 운영손익과 적립금 변동이 혼합되었으나, <표 4>와 같이 이 둘을 분리함으로서 당기의 성과와 적립금 변동이 구분되도록 한다. 이로써 당기의 운영 성과는 운영성과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표 4> 운영성과표 기본구조(안)

운영수익	
- 운영비용	
=	당기운영이익(손실) (운영차액변동계산서의 '미처분운영차액'에 반영)
±	기본금조정 (재무상태표의 '기본금조정누계액'에 반영)
=	총운영이익(손실)

운영성과표와 운영차액변동계산서가 재무상태표의 기본금 변동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고, <표 5>와 같이 운영차액변동계산서는 적립금의 변동을 표시하여 손익사항과 구별한다.

<표 5> 운영차액변동계산서 기본구조(안)

미처분운영차액	
전기이월미처분운영차액	
± 당기운영이익(손실)	
+	적립금 등 환입액
-	적립금 등 적립액
=	차기이월미처분운영차액 (재무상태표 기본금 중 '차기이월미처분운영차액'에 반영)

6. 합산재무제표와 종합재무제표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정방안

가. 합산재무제표와 종합재무제표의 실무상 문제점

현행 재무회계 특례규칙에는 종합적인 자금수지, 재무상태 및 운영수지가 적정하게 파악되도록 합산재무제표와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계기준의 차이와 계정과목이 상이하여 작성의 실익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교육부에는 합산재무제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종합재무제표의 유용성이 떨어지고 실무적으로 작성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실무적으로 작성부

담이 발생하는 원인은 회계기준이 상이한 회계보고 단위의 계정을無理하게 조정하는데 있다.

현행 합산재무제표는 법인의 일반회계와 대학의 교비회계를 합하는 것으로 회계의 성격이 유사하나, 종합재무제표는 회계기준의 차이가 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과 학교의 모든 회계를 합하는 것으로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오히려 낮아진다.

재무회계 특례규칙에서 재무제표를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로 정의함에 따라 합산재무제표 및 종합재무제표 작성 시 자금계산서도 합산하였다. 그러나 실무적인 실익이 거의 없는 자금계산서의 합산은 불필요하다.

나. 합산재무제표와 종합재무제표의 개정방안

회계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는 학교법인의 전체적인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가 더욱 유용하므로 학교법인의 종합재무제표를 작성·제출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합산재무제표는 동일회계기준 적용이라는 이점 이외에는 실무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작성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합재무제표는 기존의 합산재무제표와 종합재무제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회계기준별 차이가 있는 계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종합재무제표의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각 회계단위의 계정 중 통합이 가능한 것은 통합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계정을 그대로 합산하도록 종합재무제표의 양식을 개선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종합재무제표의 경우 수익회계⁹⁾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계정과목은 가능하면 통합하되, 수익회계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등은 적절한 관 또는 항에 그대로 표시하여 실무적으로 계정과목 조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과 같이 종합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 및 운영차액변동계산서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수익회계에서 작성하는 현금흐름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 종합재무제표 기본 양식(안)

계정과목			고유목적회계				수익회계				내부거래 제거	합계
관	항	목	교비회계	법인일반	내부거래 제거	계	법인수익	부속병원	내부거래 제거	계		

9) 고유목적회계는 학교의 교비회계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를 합한 것이고, 수익회계는 법인의 수익사업회계와 부속병원회계를 합한 것이다.

7. 재무제표 주석사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가. 재무제표 주석사항의 문제점

최근 급변하는 대학환경에서 대학의 발전을 위한 주요 핵심정책, 정원감축, 학사구조개편, 투자계획 등이 제공되어야 할 정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재무회계 특례규칙에서는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고, 주기 및 주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만 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석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어 주석사항을 별도로 보고하고 있지 않다. 사학기관 재무제표는 부속명세서만 작성되고 있다. 이러한 주석사항의 미비는 비재무정보와 중요한 회계정책 등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나. 주석사항의 개정을 통한 보충 정보의 제공

재무회계와 관련된 회계처리 방침 및 회계정책의 변화 등이 기술될 수 있도록 주석사항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석사항에는 대학의 발전계획 개요, 정원감축에 대한 정보, 학사구조개편 내역, 시설투자계획 등 대학의 중요 경영사항으로 재무정보에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현재 사립대학은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모든 사학기관에 적용되는 규칙이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대학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재무와 회계 규칙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회계기준 정비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재무회계 규칙과 재무회계 특례규칙 간의 연관성이 크지 않음에도 ‘특례’라는 명칭의 부조화, 회계용어 정의와 계정과목 체계 등 회계처리 방법 제시 등 일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규칙의 명칭 변경, 관련 용어 재정의 및 계정과목 체계 재정비 작업을 통해 대학 간의 회계처리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학기준 회계기준에 복식부기회계와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고 이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회계정보의 산출결과인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예산회계 중심의 회계처리, 운영손익을 표시하지 못하는 운영계산서, 합산재무제표 작성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분리하여 예산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회계의 재무제표로

구분하고,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운영차액변동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금주의회계 운영성과와 발생주의회계 운영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운영차액을 분리하여 당기의 성과와 적립금 변동이 구분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합산재무제표를 종합재무제표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이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특례규칙을 재정비할 때 유용할 것이고,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과 회계정보이용자들의 이해가능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옥. 2008. “우리나라 사립대학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우영·김영철·유지연. 2017. “감사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공립대학, 국립대학 법인 및 사립 대학의 회계기준 비교분석”. 감사논집. 28호 : 5-37.
- 김우영·박정훈·배현원, 서범석. 2014.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한국사학진흥재단.
- 김우영·허광복·이은철. 2015. “사학기관 재무·회계기준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글로벌경영 학회지. 제12권 제4호 : 431-458.
- 박정원. 2009. “한국 고등교육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혁방향”. 국제경상교육연구. 제6권 : 297-318.
- 박태승. 2002. “사립대학 회계의 개선방안 : 회계규정과 공개제도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11 권 제3호 : 113-149.
- 사립학교법.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 서수덕. 2014. “사립대학 회계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제57집 : 183-206.
- 이동규·서갑수·천세영·강용원. 2006.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학교회계 도입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정영관·백운경. 2006. “학교예산회계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 도입의제 문제와 기대효과”. 회 계연구. 제11권 제3호 : 303-333.
- 최철호. 2008. “사립대학 회계기준 및 실무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재무와회계정보저널. 제 8권 1호 : 73-88.
- 한국회계기준원, 비영리조직회계기준. http://www.kasb.or.kr/fe/bbs/NR_list.do?bbsCd=1105

A Study on the Analysis and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Special Rules of Financial and Accounting for Private University*

Kim, Woo-Young** · Ma, Hee-Young*** · Yoo, Ji-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in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Special Rules on the Finance and Accounting for Private Universities”, which are the accounting standards currently applied to private universities. This study not only analyzes the special rules on the finance and accounting but also compares the accounting standards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private universities that provide essentially the same educational servic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djustments seem to be necessary so that accounting can be carried out uniformly among universities through changes in titles in the special rules on the finance and accounting, redefinition of related terminologies, and reorganization of account title systems.

In addition, problems in the produc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were found such as budget accounting—centered accounting, statements of operation that cannot indicate operational performance, and difficulties in the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refore, in this study, budget accounting and financial accounting were separated from each other so that written settlements of accounts concerning revenue and expenditure are prepared for budget accounting and financial statements are prepared for financial accounting.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ed a plan to compose financial statements with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operational invoice, statements of changes in operational differences, and annotations. This study also presented a plan to compare between cash basis operational performance and accrual basis operational performance.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other plans such as replac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ith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will be helpful when the policy authorities establishing private universities’ accounting standards reorganize the special rules on the finance and accounting applied to private universities.

〈Key words〉 Private school law, Financial accounting rules for private school institutions, Financial accounting special rules for private school institutions

* This paper has been revised based on the research report of “The Study on the Accounting Standards of Private Universities” (2017.11.26.)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kimwy01@dongduk.ac.kr,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ax Accounting, Dongduk Women’s University, hyy7026@dongduk.ac.kr, Corresponding Author

**** Ph.D., Department of Accounting, Hanyang University, yoojiyeon@hanyang.ac.kr, Co-author